

##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체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를 중심으로 -

나승원<sup>1)</sup> · 성현찬<sup>2)</sup> · 이노우에켄타로<sup>3)</sup>

<sup>1)</sup> 오카야마 이과대학 종합정보연구과 · <sup>2)</sup>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 <sup>3)</sup> 오카야마 이과대학 사회정보학과

##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by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 Especially on the Upper-local Governments -

**Na, Seung-weon<sup>1)</sup> · Sung, Hyun-Chan<sup>2)</sup> and Inoue, Kentaro<sup>3)</sup>**

<sup>1)</sup> Graduate School of Informatics, Okayama University of Science,

<sup>2)</sup> Dept. of Green & Landscape Architecture, Dankook University,

<sup>3)</sup> Dept. of Socio-Information, Okayama University of Science.

### ABSTRACT

This study has focused 302 environmental ordinances enacted from 1974 to 2008 by 16 upper-local governments (7 deigned cities and 9 province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an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local autonomy system. The ordinances have been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the voluntary ones without any obligatory stipulations in laws, the optional ones based on laws, and the law based obligatory ones, which have been examined the enactment years and the contents of them. The local ordinances have been enacted in four periods with a few characteristics, which are “the pre-local-autonomy period (1974-1991)”, “the introductory-local-autonomy period (1991-1995)”, “the local-autonomy-developing period (1995-1999)”, and “the mature-local-autonomy period (after 2000)”, along the local autonomy development. 57 ordinances were enacted in the first period, 20 enacted in the second period, 46 enacted in the third period and 179 ordinances in the fourth period.

---

**Corresponding author** : Sung, Hyun-Chan, Dept. of Green & Landscape Architecture, Dankook University, Cheonan 330-714, Korea,

Tel : +82-41-550-3632, E-mail : wona2000@dankook.ac.kr

**Received** : 1 August, 2009. **Accepted** : 23 August, 2009.

The obligatory ordinances were the most in the first period and in the second period, while the voluntary ordinances were enacted most in the third period. 7 designated cities have pretty more ordinances, 160 in all, than 9 provinces, 142. The tendency to enact earlier in the metropolitan area, SeoulCity, IncheonCity and Gyeonggi province, than the others can be seen.

It can be sai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autonomy in Korea had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nvironmental management.

**Key Words :** *Local Autonomy, Environmental Ordinances, Voluntary Ordinances, Optional Ordinances, Obligatory Ordinances.*

## I. 서 론

한국에서는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장기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회가 없는 상태가 계속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어 실제적인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다, 1991년의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선거,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거쳐 지방자치가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1990년대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 변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그동안 국가의 환경정책만을 단순히 실행하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게 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연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고 안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체계는 이에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국가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본 연구의 주제에 가까운 선행연구로서 윤영채(2003)는 지방자치제도의 확립 이후, 지방환경정책의 진전을 지적하는 한편, 지방조례의 내용이 국가의 환경법 틀의 한도를 넘어 설 수 없는 점과 독자적인 지역환경보전에 효과적인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羅勝元 · 成炫贊 · 井上堅太郎 · 泉俊弘 · 待

井健仁(2007)는 한국의 지방자치에 주목하여 환경 관련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권한의 변천,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제정상황 등을 통해 국가와 지방의 환경정책에 관한 역할분담에 대한 경위, 현황 등에 관하여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 고찰 결과, 한국의 지방, 지역에 관한 환경관리, 환경행정, 주민참여, 환경분쟁 등을 다룬 많은 논문이 있었으나<sup>1)</sup>, 본 논문과 같이 환경조례에 주목한 논문은 윤영채(2003)의 것 이외에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상기의 배경과 같이,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환경정책을 그대로 실행하던 지방환경관리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체계화되고 있는지를,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업무담당 부서가 권장하고 있는 환경조례를 이용하여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한국의 지방환경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56건을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운동, NGO, 주민참여 등에 관한 연구(6건), 지방자치단체, 주민, 국가 등의 역할 및 기능등에 관한 연구(7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14건), 국가와 지방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3건), 지방환경정책 등의 변천에 관한 연구(5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의 수립·결정 등의 과정과 요인 등에 관한 연구(6건), 지방환경정책과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5건), 지방환경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 혹은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연구(5건)로 분류할 수 있었다.

## II. 연구방법 및 내용

### 1. 연구방법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기 이전 지방정부에 의해 제정된 것을 포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확립 이후 제정된 환경조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시기적 범위는 1949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정부의 탄생 이후부터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환경조례가 제정된 시점을 말한다.

분석한 환경조례에 대해, 환경법에서 반드시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무조례”, 환경법에 규정된 조례제정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 “선택조례”, 지방자치법 이외의 환경법 혹은 그 외의 법률에 제정근거를 두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독자조례”로 구분하였다.

환경조례의 내용적 범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환경부서가 소관하고 있는 조례로 한정하였으나, 환경보전정책과 매우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 4건의 환경조례에 대해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이후 외교·국방 외의 분야에 있어 독자적인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로 되었으나, 분석상 차이가 없어 본 논문에서는 도와 동일하게 다루었다. 울산시에 대해서는 동 시가 1997년에 광역시로 승격된 후에 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 2. 환경법에 규정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및 환경조례의 구분

44개 환경법<sup>2)</sup> 중 10개 법 23개 조항에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22개 법 55개 조항에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sup>3)</sup>.

2009년 3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302건의 환경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의무조례가 129건, 42.7%, 독자조례가 89건, 29.5%, 선택조례가 84건, 27.8%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례제정 수에서 인천시의 조례제정 건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와 전라북도가 12건으로 가장 적었다. 의무조례의 제정은 대구시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4건으로 가장 적었다. 선택조례의 제정은 인천시와 제주도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는 2건으로 가장 적었다. 독자조례를 가장 많이 제정하고 있는 것은 11건의 서울시로, 가장 적은 곳은 2건을 제정하고 있는 전라남도였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 3개 시·도는 의무조례나 혹은 선택조례의 수보다 더 많은 독자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는 환경조례 302건은 광역시에 의한 것이 160건, 도에 의한 것이 142건으로 광역시가 조금 더 많다. 129건의 의무조례에 있어서 광역시가 75건, 도가 54건을 제정하였고, 84건의 선택조례에 있어서는 광역시가 38건, 도가 46건을 제정하였다. 89건의 독자조례에 있어서는, 광역시가 47건, 도가 42건을 제정하였다.

환경조례의 구체적인 예로, 독자조례에는 환경기본조례,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이 있고, 의무조례에는 자연환경보전조례, 폐기물관리조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등이 있으며, 선택조례에는 환경영향평가조례,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친환경상품구매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 3.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 분석

#### 1) 제정시기

광역자치단체(1995년 6월 27일까지는 지방정부)가 제정하고 있는 환경조례를 제정년도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2) 모두 2,069조, 4,414항.

3) 1,187조항.

표 1. 환경조례의 제정근거별 내역.

&lt;단위 : 건&gt;

자치단체명	독자조례	의무조례	선택조례	조례제정수
서울시	11	11(3)	7(10)	29
부산시	5	9(5)	2( 8)	16
대구시	6	12(7)	3( 9)	21
인천시	8	14(5)	9( 9)	31
광주시	6	9(5)	6(11)	21
대전시	8	11(5)	5( 9)	24
울산시	3	9(6)	6(10)	18
소계[광역시조례/전체조례]	47[29.4%]	75(36)[46.9%]	38(66)[23.8%]	160[100%]
경기도	8	5(5)	4( 7)	17
강원도	6	4(3)	5( 5)	15
충청북도	4	4(4)	4( 5)	12
충청남도	4	7(5)	5( 6)	16
전라북도	4	5(5)	3( 6)	12
전라남도	2	6(4)	5( 7)	13
경상북도	4	6(5)	5( 5)	15
경상남도	6	7(4)	6( 6)	19
제주도	4	10(4)	9( 5)	23
소계[도조례/전체조례]	42[29.6%]	54(39)[38.0%]	46(52)[32.4%]	142[100%]
합계	89[29.5%]	129(75)[42.7%]	84(118)[27.8%]	302[100%]

주1 : 2009년3월11일 현재

주2 : ( )는 환경법에 근거를 두는 조례, ( )의 수치가 조례건수 보다 많은 것은 하나의 조례가 복수의 환경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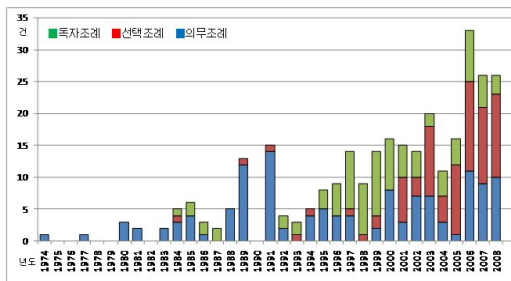


그림 1.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 제정시기.

광역자치단체 의회의원선거<sup>4)</sup>가 실시되기 이전에 59건의 환경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지방의회의

4) 1991년 6월 20일에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동년 3월 26일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가 이루어 졌다.

원선거가 실시된 이후,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전까지 조례의 제정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더욱 증가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된 1991년, 2003년, 2007년에는 환경조례의 제정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90년대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점에 착안하여 환경조례의 제정시기를 구분하고, 최초의 환경조례가 제정된 1974년 이후부터 1991년 6월까지(이하, “지방자치 이전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1991년 6월 이후부터 1995년 6월까지(이하, “지방자치 이행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1990년대 중반 이후(1995년 6월 27일 이후)

부터 1990년대말(이하, “지방자치 확립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1999년 1월29일) 및 지방자치의 강화를 포함한 지방자치법의 개정(1999년 8월 31일)이 시행되게 된 2000년대 이후(이하, “지방자치 자립기”)의 4시기로 구분 하였다.

최초의 환경조례는, 1974년에 대구시가 제정한 의무조례인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조례”이다. 이 조례는 대구시의 공원계획 및 사업집행, 그 외의 공원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원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조례는 2006년까지 8건 제정되었다. 또한, 독자조례로는 1984년에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를 제정하였고, 선택조례에서는 동년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뒤, 1989년에 의무조례인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조례가 12건 제정되었고, 1991년에는 의무조례인 환경오염분쟁조정조례가 12건 제정되었다. 더욱이, 환경오염분쟁조정조례는 광역자치단체 의회의원선거(1991년 6월 20일)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선거 후 1991년도 내에 제정된 조례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1 건 이었다. 이처럼, 1974년의 대구시 조례를 최초 사례로 하여, 지방자치 이전기에는 의무조례 47건, 독자조례 7건, 선택조례 3건, 총 57건이 제정되었다.

지방자치 이행기에 제정된 환경조례는,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운영조례” 등의 독자조례 8건, 폐기물관리조례 6건, 지하수조례 4건 등 의무조례 22건, “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의 징수조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의 징수조례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선택조례 2건, 합계 32건이었다. 폐기물관리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는 조례,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였다. 지하수 조례는, 지하수

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에 대해 조례 제정을 의무화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지하수의 영향조사, 지하수개발·이용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 확립기는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고, 첫발을 내딛는 시기로, 환경기본조례 13건, “대구광역시 조경관리조례” 등의 독자조례 33건, 지하수조례 3건, 자연환경보전조례 등의 의무조례 12건,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등의 선택조례 4건 합계 46건이 제정되었다. 이 시기까지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환경기본조례 14건<sup>5)</sup>을 제정하였고, 1997년 7월 15일에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환경기본조례 외에 6건의 환경조례를 동시에 제정하였다. 지방자치 확립기에는, 독자조례의 제정이 눈에 띄며,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조경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녹화, 경관의 향상을 위한 조경시설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경에 따른 공익적 기능, 생활환경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환경대상조례”를 제정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환경행정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을 표창하여 환경의 쾌적성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 자립기에는, “대전광역시 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sup>6)</sup>에 관한 조례” 등의 독자조례 43건, 자연환경보전조례(15건)<sup>7)</sup>, 운행차 배출가스 정

5) 지방자치 확립기 이외의 지방자치 이행기, 지방자치 자립기에 1건 씩의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6) “보상(補償)”은, 법률을 위반한 자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의미함.

7) 경기도는 1999년 11월 29일에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하였고, 2000년대 이후의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2007년 1월 2일에 서울시를 마지막으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도입하였다.

밀검사에 관한 조례(13건)<sup>8)</sup> 등의 의무조례 62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15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16건) 등의 선택조례 74건을 합친 179건이 제정되었다. 이 시기의 기간 중에 조례제정 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선택조례의 증가가 현저하였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 제한)에 근거하여, 광역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선택에 있어,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도록 촉진한다.

지방자치 이전기에 제정된 환경조례 57건 중, 의무조례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 이행기에 제정된 환경조례 20건 중 의무조례가 12건, 독자조례가 6건이었다. 지방자치 확립기에는 46건의 환경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중 독자조례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 자립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환경조례가 제정되었고, 선택조례 74건, 의무조례 62건, 독자조례 43건, 총 179건이 제정되었다. 이처럼, 지방자치 이전기 및 지방자치 이행기에는 의무조례의 제정이 많았고 지방자치 확립기에는 독자조례 제정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 자립기에는 독자, 의무, 선택조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2) 광역시와 도의 환경조례제정 상황 비교 환경조례에 대해 광역시와 도로 나누어 조례

8) 부산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에 자동차공회전 제한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로써 반영하지 않는다.

제정시기의 분포를 파악함과 동시에, 의무조례, 독자조례, 선택조례에 대해 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정과 관련하여 환경조례의 시기구분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 이전기(1974-1991)의 환경조례는 57건이 제정되었고, 의무조례에 대해서는 광역시(당시 직할시<sup>9)</sup>) 23건, 도 24건으로, 양자는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독자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광역시가 6건, 도가 1건으로 광역시 쪽이 도보다 많이 제정하였다.

지방자치 이행기(1991-1995)의 환경조례는 20건이 제정되었고, 의무조례에 대해서는 광역시 9건, 도 3건으로 광역시 쪽이 지방자치 이전기에 이어 많이 제정하였다. 도는 독자조례 3건, 선택조례 2건으로 총 조례제정 건수 면에서 지방자치 이전기 보다 약 1/3로 감소하였으나, 광역시와 도의 제정수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다.

지방자치 확립기(1995-1999)의 환경조례는 46건이 제정되었고, 의무조례 9건, 독자조례 33건, 선택조례 4건이었다. 독자조례에 대해서는 광역시 17건, 도 16건으로 양자는 비슷한 건수를 보였다. 의무조례 및 선택조례에 있어서는 광역시의 제정수가 많았다.

지방자치 자립기(2000년 이후)의 환경조례는 179건이 제정되었고, 의무조례 62건, 독자조례 43건, 선택조례 74건이었다. 선택조례에 대해서는 광역시 32건, 도 42건으로 양자 모두 지방자치 확립기에 비해 대폭 제정수가 증가하였고, 특히 도에서 많이 제정하였다.

지방자치 이전기 및 지방자치 이행기에 있어, 의무조례가 비교적 많이 제정되었고, 지방자치 확립기에는 독자조례의 제정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 자립기에는 의무조례, 독자조례, 선

9) 직할시는 도시행정수요와 특수성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나 법적 자격은 없고, 100만명 전후의 인구, 대도시적 형태 및 기능·규모 등을 갖추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준비하기 위해 이루어진 행정개혁에 따라, 1995년 1월부터 광역시로 되었다.

표 2. 지방자치와 환경조례의 제정시기에 따른 시기구분.

&lt;단위 : 건&gt;

시 기	광역시				도				합 계			
	의무	독자	선택	소계	의무	독자	선택	소계	의무	독자	선택	소계
지방자치 이전기	23	6	2	31	24	1	1	26	47	7	3	57
지방자치 이행기	9	3	0	12	3	3	2	8	12	6	2	20
지방자치 확립기	7	17	3	27	2	16	1	19	9	33	4	46
지방자치 자립기	37	21	32	90	25	22	42	89	62	43	74	179
합 계	76	47	37	160	54	42	46	142	130	89	83	302

주1 : 1974년 이후부터 1991년 6월까지를 지방자치이전기로 한다.

주2 : 1991년 6월 이후부터 1995년 6월까지를 지방자치이행기로 한다.

주3 : 1995년 6월 이후부터 1999년 8월까지를 지방자치확립기로 한다.

주4 : 2000년 이후를 지방자치자립기로 한다.

택조례의 제정수 모두가 급증하였고, 특히 선택조례가 가장 많은 증가를 나타냈다.

지방자치 이전기는, 의무조례 제정수가 총 조례 제정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광역시, 도 모두 그 외의 조례에 비해 많았고,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치 이행기까지 이어졌다. 지방자치 이행기에는 광역시가 도 보다 많은 의무조례를 제정하였다. 지방자치 확립기에는 독자조례의 제정수와 총 조례 제정수에 대한 비율이 광역시, 도 모두 많아졌고, 제정건수가 지방자치 이전기, 지방자치 이행기에 비해 급증하였다. 지방자치 자립기에는 환경조례의 제정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광역시는 의무조례의 제정비율이 높고, 도는 선택조례의 제정비율이 높았다.

### 3) 환경조례의 내용별 분류와 대표사례 및 광역자치단체간의 조기 제정성 분석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는 302건의 환경조례에 대해, 분야별 및 독자·의무·선택조례별로 제정건수를 표 3에 정리하였다. 이 표에서 나타낸 분야별 구분은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경기도 푸른 경기21 실천협의회 지원조례” 등의 환경의 기본정책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가로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등의 경제적 유인 등에 관한 조례,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라남도 야생·동식물보호조례” 등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공원

표 3. 환경조례의 내용별 분류.

(단위 : 건)

환경조례분야	조례수	독자	의무	선택	환경조례분야	조례수	독자	의무	선택
환경의 기본정책에 관한 조례	49	32	15	2	도시환경보전에 관한 조례	15	4	13	0
경제적 유인 등에 관한 조례	6	3	1	2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16	0	16	0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38	4	28	4	폐기물에 관한 조례	24	0	17	5
수질환경에 관한 조례	32	11	18	5	그 외의 조례	50	31	3	26
대기환경에 관한 조례	51	4	16	3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9	0	0	9	조례 합계	302	89	127	86

조례” 등의 도시환경보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의 대기환경에 관한 조례 등 총 9개의 조례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유형별 대표적인 조례 및 특징 등은 아래와 같다. 환경의 기본정책에 관한 조례로 분류하고 있는 환경기본조례는, 지방자치 이행기부터 지방자치 자립기에 걸쳐 제정된 독자조례이다. 본 조례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환경백서의 발행, 정보공개, 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것이다. 주목할 내용으로는 지역환경기준을 들 수 있다. 대전시, 서울시, 대구시,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제주도의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대기환경과 관련하여 SO<sub>2</sub>오염의 지역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의 SO<sub>2</sub> 환경기준은 0.15ppm(1시간치)임에 반해, 부산과 제주도가 0.10ppm(1시간치)로 가장 엄격하였고, 대전시가 0.13ppm(1시간치)로 가장 높은 지역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 및 제주도는 대기뿐만 아니라 하천의 지역수질환경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소음에 관한 지역환경기준까지 도입하고 있다.

환경의 기본정책에 관한 조례로 분류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 확립기의 독자조례이다. 1992년에 UN이 채택한 의제21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인천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해 본 조례에 따른 협의회 설치를 목적으로, 1999년 2월에 제정되었다. 인천의제21은 인천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인천시의 시민, 기업 및 시 등이 상호 협력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2004년 5월 14일)”를 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지방자치 자립기의 독자조례이다. 지속가능발전의 달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협조하며 현재 세대 및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함을 목적

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08년 2월 4일 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2009년 4월에는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에 통합되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평가에 대해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지속가능성평가를 실시할 때에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이행계획에 관한 점검결과 및 그 당시의 국내외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경제적 유인 등에 관한 조례로 분류한 4개 중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에너지 이용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의 기후변동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이행기인 1992년 1월에 제정된 독자조례이다. 기금의 용도는,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사업,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대체사업,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등이다.

두 번째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단체의 활동지원, 환경관련연구기관의 지원, 학술단체의 연구·조사활동지원 및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확립기인 1999년 11월에 제정된 독자조례이다.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용자, 지역주민 및 민간환경단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환경보전과 관련된 조사·연구·기술지도 등에 대한 지원 및 사업비의 보조금 등이다.

세 번째로,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장 이외



의 자가 가로수의 식재, 이식, 제거, 전정 또는 훼손 등에 대한 승인절차, 비용부담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자립기인 2008년 3월에 제정된 독자조례이다. 시장은, 사고 또는 그 외의 이유로 가로수를 훼손한 때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강원도 수질오염 저감기금 설치 및 조례”는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혹은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자립기인 2001년 10월에 제정된 독자조례이다. 기금의 용도는 오수·가축분뇨시설의 설치비용자 지원 혹은 민간부문에서 융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의 지급, 지역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등이다.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조례로 분류한 “자연환경보전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위임한 위임업무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자연경관의 보전” 등 13항목에 걸쳐 조례제정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1999년 11월에 경기도가 처음으로 제정하였고 2007년 1월 서울시를 마지막으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하였다. 각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수립,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확립기부터 지방자치 자립기에 걸쳐 제정된 의무조례이다.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서울시의 자연환경보전조례의 특징은 법률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장은 생태적·경관적가치가 높은 산림, 하천 및 습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제14조(자연경관영향의 검토)에서는, 법정대상 이외의 개발사업 등에 대해 인·허가를 할 경우에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수질환경에 관한 조례로 분류한 “지하수조례”는, 서울시, 대구시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의 적정성을 기하며 지하수 오염을 예방함과 동시에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확립기부터 지방자치 자립기에 걸쳐 제정된 의무조례이다. 광주시, 부산시, 인천시가 제정하고 있는 조례는 시장이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 혹은 변경 지정 하였을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시설에 대해,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부산광역시 보건연구원 또는 부산광역시 상수도 본부에 의뢰한 때에는 수질검사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의 조례로 분류하고 있는 “친환경상품구매조례”는, 친환경상품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구매 촉진 등)에 근거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제정되었고, 지방자치 자립기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친환경상품구매의무에 관한 사항, 친환경상품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등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선택조례이다. 단, 조례의 제정 혹은 변경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친환경상품구매조례에 있어 주목할 점은 시행 촉진방법이다. 경기도 및 전라북도도 도 직속의 기관 및 도가 출자하고 있는 공공기업 등의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구입실적을 반영하여 사업내용을 평가하고 있으나, 그 외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표 4. 7종류의 조례와 광역자치단체별 제정시기 순서.

조례의 종류	제정시기 순서		
	충청북도(1995.5.22)	대전시(1996.04.15)	서울시(1996.5.20)
환경기본조례	충청북도(2001.8.4)	제주도(2001.9.19)	서울시(2002.3.20)
친환경상품구매조례	제주도(2006.3.15)	경기도(2006.12.26)	서울시(2007.5.29)
자연환경보전조례	인천시(1991.2.12)	울산시(1997.7.15)	서울시(1999.3.20)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서울시(2002.4.20)	인천시(2003.2.17)	경기도(2003.3.3)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시(2003.7.15)	충청남도(2003.9.19)	전라북도(2003.11.14)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인천시(1991.2.12)	대전시(1991.2.13)	강원도(1991.2.18)

실적이 뛰어난 부서, 기관 등에 대해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기환경에 관한 조례로 분류하고 있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 제한)의 규정에 근거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따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혹은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현재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자립기에 제정된 선택조례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 있어 주목할 점은, 제한 시간 및 벌칙이다. 서울시, 대구시는 가솔린 차량과 경유차량에 대해 각각 3분, 5분의 상이한 공회전 제한시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외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 차량에 대해 일괄적으로 5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회전 제한의 벌칙규정에 있어 서울시는 1회의 위반에 대해 2만5천원부터 5만원, 그 외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회의 위반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의 장이 과태료를 징수하지만, 그 외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치구의 장,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조례는, 1997년 3월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법정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적 특수성을 고려한 조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2001년 8월에 강원도의 조례를 처음으로, 제주도(2001.9), 서울시(2002.3), 인천시(2003.7), 주도((2003), 대전(2004), 경상남도(2006), 광주((2007)의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자립기에 제정된 선택조례이다.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는 도시의3.7, 에너지.7 등 대상사업은 최소 3분야에서 최대 16분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적게는 2분야에서 많게는 6분야의 환경에 대한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벌칙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첫회)에서 최고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500만원(3회째는 1,000만원)등, 12항목에 걸쳐 과태료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9개 분야의 환경조례 중, 과반수의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는 환경조례 중에서 7종류의 환경조례를 선정하여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제정이 빠른 순서대로 3위까지를 표 4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제정순서는 광역시가 빠르며, 특히 서울시가 1종류 이외의 제정시기에서 빠르게 나타났고, 2종류의 자동차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가장 빨랐으며, 환경기본조례에 있어서는 3번째로 제정하였다. 또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수도권에 위치한 시·

도가 빠른 제정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광역시가 제정순서에 있어 상위 3위 안에 12건이 포함되어 도의 9건 보다 많았다.

### III. 고 찰

#### 1. 지방자치의 변천과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 제정 추이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는 환경조례에 대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입각하여 지방자치 이전기, 지방자치 이행기, 지방자치 확립기, 및 지방자치 자립기의 4시기로 구분하였다.

지방자치 이전기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방기관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었고, 법률에 근거한 의무조례는 47건이 제정되었으나, 독자조례와 선택조례는 7건과 3건이 제정된 것에 불과하였다.

지방자치 이행기에는, 광역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가 1991년 6월에 실시되었고, 이 기간에 20건의 환경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독자조례는 6건, 선택조례는 2건만이 제정되어 지방자치 이전기와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었다.

지방자치 확립기에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및 광역자치단체 의회의원선거가 1995년에 실시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46건의 환경조례가 제정되었고, 독자조례가 33건, 의무조례가 9건, 선택조례가 4건이었다. 이 시기에는 독자조례의 제정건수가 급증하였던 시기이다.

지방자치 자립기에는 1999년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사무의 이관이 이루어졌다. 2000년 이후 약 10년간, 독자조례 43건, 의무조례 62건, 선택조례 74건 합계 179건의 환경조례가 제정되었다. 특히 광역시, 도로 나누어 시기별로 제정상황을 보았을 경우, 지방자치 이행기, 지방자치 확립기의 의무조례 제정건수에 주목할 수 있다. 광역시가 각각 9건, 7건을 제정하고 있으며, 도의 3건, 2건 보다 많으며, 대기에

관련된 환경조례의 제정이 눈에 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단계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 제정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지방자치 확립기, 즉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독자조례의 제정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 2. 광역자치단체별 환경조례의 제정상황 및 특징

환경조례의 제정 수는 7개 광역시가 160건, 9개 도가 142건, 이중 독자조례는 광역시가 47건, 도가 42건으로 총 조례제정 수, 독자조례 수 모두 광역시의 제정수가 많았다.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 제정건수에 있어서는 인천시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서울시 29건, 대전시 24건 등이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수도권이 77건(25.5%)의 환경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경우 수도권에 편중되는 경향이 보였다. 특히 수도권은 환경 기본조례가 많고(10건), 다음으로 대기관련, 폐기물관련(8건씩) 이었다. 독자조례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1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가 8건이었다. 환경조례 및 독자조례의 제정상황을 통해 수도권은 도시화에 따른 대기오염 및 폐기물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자동차에 의한 NO<sub>2</sub> 대기오염에 있어 지방자치 자립기 이후, 국가의 환경기준 0.03ppm(년평균)을 초과하였으며, 또한 PM10의 경우에도 환경기준인 50 $\mu$ g(년평균)을 초과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 제정시기의 순위에 있어서는, 반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는 환경기본조례, 환경영향평가조례 등 7종류의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 3위까지 파악한 결과로부터, 광역시가 도에 비해 초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경향이 보였다. 특히, 수도권에 속한 서울시, 인천시의 환경조례 초기 제정건수는 9건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시·도가 초기에 제정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7종류의 환경조례 제정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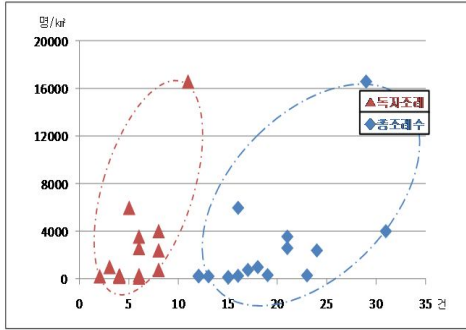


그림 2. 환경조례와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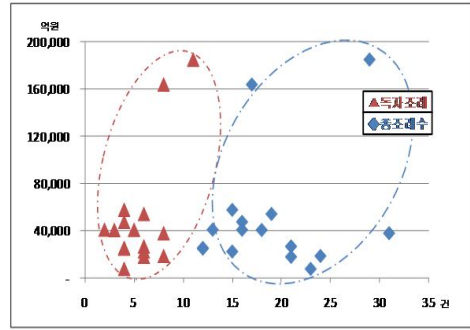


그림 3. 환경조례와 GRDP.

기 순위로부터 수도권의 조례제정이 그 외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빠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지방환경정책의 진전과 그 사회적 요인

한국의 지방환경정책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를 통해 밝혀보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 제정과 관련된 분석에 있어서는, 환경조례의 제정 시기, 독자조례, 선택조례, 의무조례의 종류, 광역시와 도, 수도권외의 자치단체와 그 외의 광역자치단체 간의 상이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하였다. 이러한 차이점과 사회적 지표와의 관계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제정상황과 인구밀도,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이하, “GRDP”)의 관계를 그림 2,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인구밀도(2005년)에 있어서 광역시에서는, 서울시가 약 1만 6천명/km<sup>2</sup>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울산시가 약 1천명/km<sup>2</sup>으로 가장 낮았다. 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약 1천명/km<sup>2</sup>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가 88명/km<sup>2</sup>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광역시의 평균 인구밀도가 약 4천 5백명/km<sup>2</sup>인 것에 비해, 도는 약 3백명/km<sup>2</sup>에 지나지 않으며, 전국 평균 475명/km<sup>2</sup>을 넘는 도는 경기도 뿐이었다.

한편, 2005년도의 광역시 및 도의 GDP대비 GRDP의 구성비율은, 각각 45.7%와 54.3%였다. 광역자치단체의 일인당 GRDP(2005년)에서는,

도의 평균치가 약 1,800만원인 것에 비해, 광역시의 평균치는 약 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울산시와 같이 계획적으로 공업화된 도시에서는 일인당 GRDP가 약 3,9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같이 인구가 1천만명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GRDP의 평균치가 도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곳도 있었다.

인구밀도, GRDP와 총조례 제정수, 독자조례 제정수에 대한 상관계수를 파악한 결과, 인구밀도와 총조례 제정수는 0.613, 인구밀도와 독자조례 제정수는 0.612였고, GRDP와 총조례 제정수는 0.249, GRDP와 독자조례 제정수는 0.612였다. 두 지표와 독자조례 제정수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림 2,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수치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정진·정희성(2003)들은, “환경정책은 특정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조건을 반영한 다양한 요인에 따른 영향을 받으며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밝힌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제정상황의 차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규명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환경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은 정치적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였고, 인구밀도가 높으며, GRDP가 많을수록 환경조례 및 독자조례의

제정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간에는 경제규모에 있어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환경조례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방환경정책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업무담당 부서가 관장하고 있는 환경조례를 이용하였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해 지방자치 이전기, 지방자치 이행기, 지방자치 확립기, 지방자치 자립기의 4기로 구분하였다.

지방자치의 변천과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 제정추이의 분석결과, 지방자치 이전기, 지방자치 이행기에는 의무조례의 제정건수가 많았으나, 지방자치 확립기에는 독자조례가 증가하였고, 지방자치 자립기에는 독자조례, 선택조례, 의무조례의 모든 제정건수가 급증하였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확립이 지역의 환경정책을 가속화 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별 환경조례의 제정상황 및 특징을 분석한 결과, 환경조례의 제정 수는 7개 광역시가 160건, 9개 도가 142건, 이중 독자조례는 광역시가 47건, 도가 42건으로 총 조례제정수, 독자조례수 모두 광역시의 제정수가 많았다.

지방환경정책의 진전과 사회적 요인을 검토해 본 결과,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수치로 보기는 어려우나, 인구밀도, GRDP와 총조례 제정수, 독

자조례 제정수에 대한 상관계수를 파악한 결과, 인구밀도와 총조례 제정수는 0.613, 인구밀도와 독자조례 제정수는 0.612였고, GRDP와 총조례 제정수는 0.249, GRDP와 독자조례 제정수는 0.612로서, 두 지표와 독자조례 제정수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 제정 움직임에는 차이가 있었고, 이것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 인 용 문 헌

- 윤영채. 2003. 지방자치시대의 환경관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47-271.
- 이정진·정희성. 2003. 한국 환경정책의 발달동인 : 정책의 창문은 어떻게 열렸는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pp.19-23, p.27.
- 이창훈·정희성·이병준. 2004. 지방화·세계화 시대 지역 환경관리의 과제와 정책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p.43-175.
- 통계청. 2002. 통계연감.
- 환경부. 2008. 환경통계연감.
- 羅勝元·成炫贊·井上堅太郎·泉俊弘·待井健仁. 2007. 韓國の環境政策における國と地方の役割分担に關する研究－京畿道の例を中心に－日本環境情報科學會環境情報科學論文集21号, pp.321-326.